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최초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통지(안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발급기간	비고
1	박**	2007. 3. 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1로 43번길 22,**	2024. 4. 01.~ 2025. 3. 31.	폐문부재
2	유**	2007. 3. 0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1로 43번길23,**	2024. 4. 01.~ 2025. 3. 31.	폐문부재

2. 공고기간 : 2024.4.26. ~ 2024.5.17. (21일간)

3. 본인 확인(다음 중 하나)

- 신분증명서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
- 신분증명서가 없는 경우 부 또는 모, 그 외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대동

4. 준비물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제출

5. 유의사항

○ 위 기간 내에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최고 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공고 기간 경과 후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의 규정에 따라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324-6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4. 26.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